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업안전기준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의 인력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고용노동부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7명)과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또는 5급 8명)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3.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제4호를 삭제한다.

3의2.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
제25조제2항 중 “노동시장조사과장, 산업안전기준과장”을 “노동시장조사과장”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25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2년 5월 30일”을 “2024년 5월 31일”로 한다.
별표 6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종전의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환원된 정원을 제외한 이 표의 정원 7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사무관 5명,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으로 본다.

별표 1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종전의 노동부령 제270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환원된 정원을 제외한 이 표의 정원 12명(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명)은 2023년 12
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
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명, 행정사무관 8명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 ⑨ (생략) ⑩ 산업보건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14. (생략) ⑪ 직업건강증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u>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u> 5. ~ 12. (생략) ⑫ ~ ⑯ (생략)	제8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u> 4. ~ 14. (현행과 같음) ⑪ ----- -----.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5. ~ 12. (현행과 같음) ⑫ ~ ⑯ (현행과 같음)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애인 고용과장, <u>노동시장조사과장</u> , <u>산업안전기준과장</u> , 건설산재예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노동시장조사과장</u> ----- -----

방정책과장, 화학사고예방과장, 고양지청장, 충남지방노동위원 회 사무국장, 전남지방노동위원 회 사무국장, 경남지방노동위원 회 사무국장, 경북지방노동위원 회 사무국장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임 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 ----- ----- ----- -----.
고용노동부령 제254호 고용노동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54호 고용노동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15의 정원 2 명(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2 명)은 <u>2022년 5월 30일까지</u> 존 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 ----- ----- --- <u>2024년 5월 31일</u>----- -----.